

별첨자료

# 국가연구개발(R&D) 사업 주요 적발사례

2017. 3.

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

## || 목 차 ||

### 1. 대상기관별 적발사례 ..... 1

#### 가. 대학(산학협력단) : 21개 대학, 77건 적발

- ① 참여연구원(학생)의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, 사적(私的) 사용 ... 1
- ② 동일한 증빙서류를 두 개의 과제에 첨부, 이중 사용 .... 1
- ③ 회의비를 참여연구원의 식사 비용으로 부당 사용 ..... 1
- ④ 과제 관리 소홀 ..... 1

#### 나. 중앙부처·지자체·공공기관 : 17개 기관, 47건 적발

- ⑤ 중앙부처가 산하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, 지자체와 수행기관이 공모하여 사업자 선정조건이 충족된 것처럼 공문서 발급 ..... 2
- ⑥ 10여년간 연구기관 보유기술 불법 유출, 그 대가로 금품수수 등 ... 4
- ⑦ 연구사업 관련 국외출장시 일정의 대부분을 사적(私的) 관광 ..... 5

#### 다. 민간기업 : 34개 업체, 43건 적발

- ⑧ 연구원 허위 등록 후 인건비 횡령 ..... 5
- ⑨ 연구재료 과다 구입 후 타 용도로 사용 ..... 5

### 2. 진행단계별 적발사례 ..... 6

# 1 대상기관별 적발사례

## 가. 대학(산학협력단)

- 21개 대학에서 77건이 적발되었으며, 대학에 지원되는 국가R&D 연구비는 연간 4.3조원(22.8%) 규모임('15년 18.9조원 기준)
  - 77건 중 집행단계가 74건(96.1%)으로 대부분이며, 정산단계 2건, 사후관리단계 1건 적발

### 1 참여연구원(학생)의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, 사적(私的) 사용

- ○○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『△△용 모듈 및 시스템 개발('15.11월~'16.10월, 1억원)』 등 12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,
  - '13~'15년까지 참여연구원(학생) 25명의 인건비 통장을 교수가 직접 관리하며 해외연수비용 및 개인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총 1억 3,062만원 유용(수사의뢰)

### 2 동일한 증빙서류를 두 개의 과제에 첨부, 이중 사용

- ○○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△△ 범부처 사업단의 세부과제 2건을 수행하면서, '15.9월 A과제\*에서 구입한 재료의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B과제\*\* 재료 구입 시에도 동일하게 첨부한 후 거래명세서에 인수자 서명을 하고 연구비카드로 재료비 집행
  - \* A과제 : 연구기간('14.11월~'15.11월), 연구비(1억 5천만원)
  - \*\* B과제 : 연구기간('14.11월~'15.10월), 연구비(1억 5천만원)

### 3 회의비를 참여연구원의 식사 비용으로 부당 사용

- ○○대 교수는 『△△글로벌 연구센터('11.9월~'18.8월, 9억 6천만원)』 과제를 수행하면서,
  - '12.7월~'16.5월까지 월례회의 등 연구와 관련없는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비로 참여연구원의 평일 점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총 51회에 걸쳐 1,480만원 집행

### 4 과제 관리 소홀

- ○○대 산학협력단은 '14.1월~'16.10월까지 교수 등 634명이 연구과제가 종료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연구노트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관리 소홀

## 나. 중앙부처·지자체·공공기관

- 17개 기관에서 47건이 적발되었으며, 공공기관 등에 지원되는 국가R&D 연구비는 연간 9.4조원(49.7%) 규모임('15년 18.9조원 기준)
- 47건 중 집행단계가 32건(68.1%)으로 가장 많았고, 대학과 민간기업에 비해 과제·기관선정 및 사후관리 단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발(11건중 7건)됨

### 5] 중앙부처가 산하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, 지자체와 수행기관이 공모하여 사업자 선정조건이 충족된 것처럼 공문서 발급

#### □ 민간기업인 A연구원과 관련하여

- '15.4월, 중앙부처 ○○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공공기관인 ◇◇원이 발주한 『△△ 관련 특수목적기계 등 개발(예산: 229억원)』 과제 주관기관 선정 시 민간기업인 A연구원 컨소시엄은 B대학교 컨소시엄과 경쟁하여 탈락

-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·감독 권한 등을 가진 ○○부 소속 R&D사업 담당자는 탈락한 위 A연구원의 청탁\*을 받고

- 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담당하는 위 ◇◇원에 재평가를 지속 요구하며 과제 승인을 지연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기 탈락한 위 A연구원을 위 B대학교 컨소시엄에 추가로 참여(5년간 29억원)시킴

\* 위 A연구원 원장은 위 ○○부 공무원 출신으로 위 A연구원이 주관기관 경쟁에서 탈락되었음에도 위 ○○부 담당자에게 사업참여를 수차례 청탁

- 지방자치단체 C시는 ◇◇원에서 발주한 『△△건설기계 종합지원사업(예산: 250억원)』 과제와 관련하여, 입찰에 참여한 위 A연구원(민간기업)과 공모하여 사업자 선정의 필수 조건인 '지자체 토지 무상제공'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공문서를 발급

- 위 A연구원 원장은 『△△건설기계 종합지원사업』 등 정부출연 연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, '14.2월~'16.11월까지 연구와 관련 없는 사적 용도로 간접비 약 2억 4천만원\* 부당집행(수사의뢰)

\* (경조사비) 기관 업무추진비에서 대외 경조사비 명목으로 매월 200~250만원씩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는 등 총 9,668만원 사적 사용  
(골프) 총 20회에 걸쳐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612만원을 사업비로 집행  
(화환 구입비) 경조사 화환구입비로 총 1,719만원을 사업비로 부당집행  
(대리운전비) 매월 고정적으로 법인 대리운전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비 총 1,615만원을 사업비로 부당집행 등

< A연구원이 주관기관 선정에서 탈락한 후, 소관부처 담당자의 압력으로 과제를 선정받은 B대학교 컨소시엄에 추가로 참여한 사례 >

세계 최강국... 시대를 선도합니다

공공기관 ◇ ◇ 원

수신 : A 연구원 (경유) (총괄주관책임자)  
 제목 : 핵심기술개발사업(생산시스템) 신규평가 위원회 결과통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 
 2. 핵심기술개발사업(생산시스템)으로 선정하신 과제의 평가 위원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 
 3.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,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  
 4. 향후에도 중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- 아 래 -

가. 과제명 : △△관련 특수목  
 나. 평가결과 : 지원제외  
 다. 평가위원명단 : [이름들]

**A연구원, 주관기관 선정에서 탈락 ('15.5.21)**

공공기관 ◇ ◇ 원장

직명 : [이름] 담당 : [이름] 단장 : [이름]

시행 (2015.05.21) 접수  
 우  
 전화  
 윤리경영, 보이지 않는 기술 경쟁력

세계 최강국... 시대를 선도합니다

공공기관 ◇ ◇ 원

수신 : (세부주관책임자)  
 (경유)  
 제목 : 핵심기술개발사업(생산시스템) 변경요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

1. 관련 : ( ) 참여기관 변경에 따른 승인 요청  
 2. 위 호와 관련하여 핵심기술개발사업(생산시스템)으로 수행중인 과제에 대하여 변경요청 사항이 아래와 같이 처리 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립니다.

- 아 래 -

가. 과제명 : △△관련 특수목특기계용 핵심요소부품 및 시스템개발

나. 변경구분 : 참여기관(기연)변경,사업비(정부출연금/민간부담금) 변경  
 다. 처리결과 : 승인  
 라. 검토의견 :  
 1)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보유 기관( A 연구원 )을  
 추가하고, 연구내용 소장에 따라 참여기관( B 대학교 산학협력단 )을 제외하는 것을 승인함.  
 2) 참여기관 변경에 따른 민간부담금 변경을 승인함.  
 - 변경전 : 민간부담금 현금( 원), 현물( 원)  
 변경후 : 민간부담금 현금( 원), 현물( 원), 끝.

**A연구원, 탈락한 과제에 추가로 참여 ('15.8.10)**

공공기관 ◇ ◇ 원장

직명 : [이름] 대장 : [이름] 원장 : [이름]

시행 (2015.08.10) 접수  
 우  
 전화  
 윤리경영, 보이지 않는 기술 경쟁력

< A연구원은 지자체 C시 소유의 토지를 유상임차하고 있음에도 사업자 선정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C시와 공모하여 무상임대라고 공문서를 작성한 사례 >

【서식 제7호】

전용공간 확보 확인서

□ 과제현황 (단위: 원)

사업명	공동연구기관구축사업		
과제명	△△관련 특수목특기계용 핵심요소부품 및 시스템개발		
주관기관	A 연구원	총괄책임자	○○○
참여기관 1	○○○○○원	참여기관 2	(재)○○○○○○원
참여기관 3	○○대학교	지방자치단체	C 시
사업기간	2010.06.01~2015.03.31	당해 협약기간	2011.04.01~2012.03.31
총 사업비	현금 29,900,000 원물 10,150,000 원물 40,050,000	당해 사업비	현금 7,000,000 원물 7,080,000 원물 14,080,000

□ 전용공간 현황 (단위: 원)

구분	2차년도		비고
	계획	납부	
실차시험장 부지	7,000,000	7,000,000	C시 소재 산 171-1번지
합계	7,000,000	7,000,000	

기술혁신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용공간을 상기와 같이 **무상임대** 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12. 03. 30.

**C시가 A연구원의 사업자 선정조건을 맞추기 위해 무상임대 공문서 작성('12.3.30)**

주관연구기관명 A 연구원 (인)  
 지방자치단체 C 시 (인)

공공기관 ◇ ◇ 원장 귀하

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. 페이지 1/1

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00000000-00000000-00000000

등록번호	000-00-00000	증사업장번호	000-00-00000	등록번호	000-00-00000	증사업장번호	000-00-00000
상호(법인명)	C 시청	성명	○○○	상호(법인명)	A 연구원	성명	○○○
사업장주소	○○○도 C시 ○○로 ○○	사업장주소	○○○도 C시 ○○로 ○○	사업장주소	○○○도 C시 ○○로 ○○	사업장주소	○○○도 C시 ○○로 ○○
업태	부동산	종목	임대	업태	서비스	종목	회계연구
이메일		이메일		이메일		이메일	

작성일자	공급가액	세액	수정사유
2014/06/27	70,778,700	7,077,870	

월	일	품목	규격	수량	단가	공급가액	세액	비고
06	27	공유재산사용료				70,778,700	7,077,870	

**실제 사업수행 A연구원이 C시의 토지를 유상임차하고 그 사용료를 납부함('14.6.27)**

합계금액	현금 77,856,570 수표 0 어음 0 외상미수금 0 이 금액을 (청구) 함
------	--



⑥ 10여년간 연구기관 보유기술 불법 유출, 그 대가로 금품수수 등

○ ○○연구원 책임연구원 D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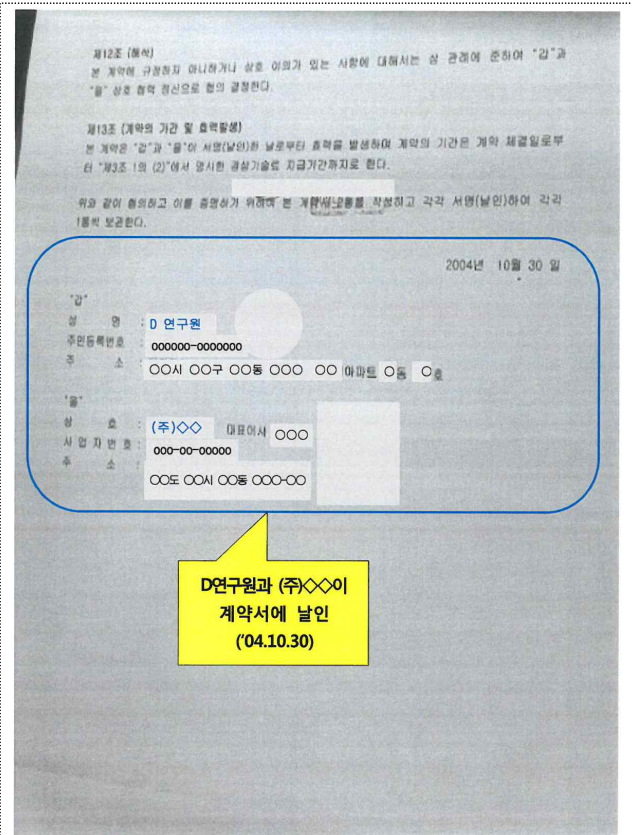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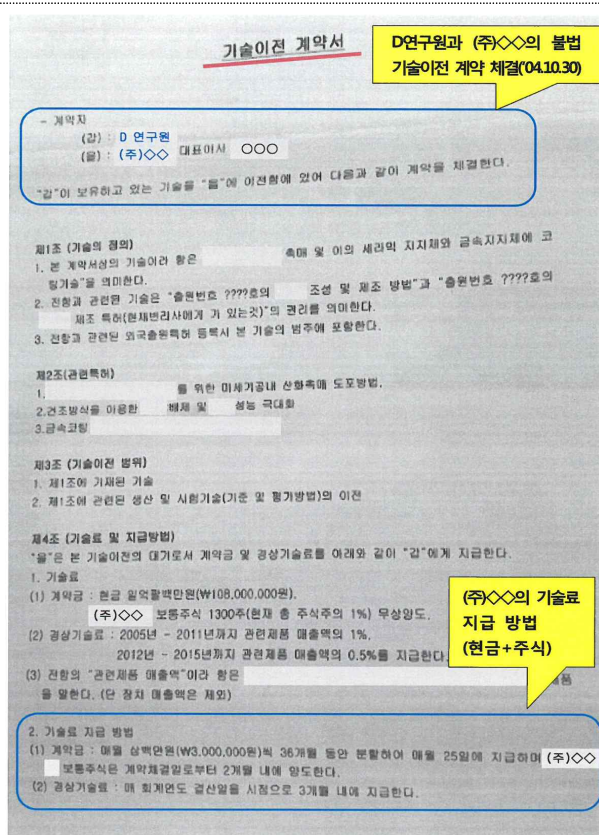
- '04.10월~'13.4월까지 (주)◇◇과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소속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불법 이전해 주고 그 대가로 총 53회에 걸쳐 3억 1,610만원과 회사주식 1,300주 수수

- 또한, 연구과제와 관련된 외부 기술자문은 기관 차원에서 공식 계약을 체결하여 투명하게 시행하여야 함에도, (주)◇◇에 소속기관 모르게 개인적으로 기술자문\*을 해주고 그 대가로 2억 4,746만원 수수

\* ('01~'04년) (주)◇◇의 제품관련 자문 대가로 총 4,746만원 수수  
('11~'14년) (주)◇◇의 정기 기술자문을 해주고 총 2억원 수수

- '13년부터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회계부서의 검수 및 대금지급 직후 자신의 연구실에서 그 물품을 되돌려주고 차액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1,978만원을 횡령하였고, 직무 관련업체(납품업체·공동연구업체 등)로부터 납품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1,120만원 상당의 금품도 수수(수사의뢰)

< 불법 기술이전 계약서 >



## 7 연구사업 관련 국외출장 시 일정의 대부분을 사적(私的) 관광

- ○○연구원 책임연구원은 『△△ 관련 기술개발(‘15.1월~12월, 7.7억원)』 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면서,
  - ‘15.4월에 동 연구사업 관련 미국 출장(17박 19일, 출장비 617만원)시 연구활동은 2일간만 실시하고, 나머지 기간은 개인적으로 미국 서부지역(라스베가스 등) 일대 관광

## 다. 민간기업

- 34개 업체에서 43건이 적발되었으며, 민간기업에 지원되는 국가R&D 연구비는 연간 4.0조원(21.2%) 규모임(‘15년 18.9조원 기준)
  - 43건 중 집행단계가 38건(88.4%)으로 가장 많았고, 과제·기관 선정단계 1건, 정산단계 2건, 사후관리단계 2건 적발

## 8 연구원 허위 등록 후 인건비 횡령

- (주)○○은 『△△ 관련 해외수출용 콘텐츠 개발(‘15.10월~‘17.5월, 5.4억원)』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는 해당 연구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함에도,
  - ‘15.10월~‘16.5월까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5명을 참여인력으로 허위 등록한 후, 이들의 인건비 등을 회사 운영 계좌로 되돌려 받아 임대료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총 1억 962만원 횡령(수사의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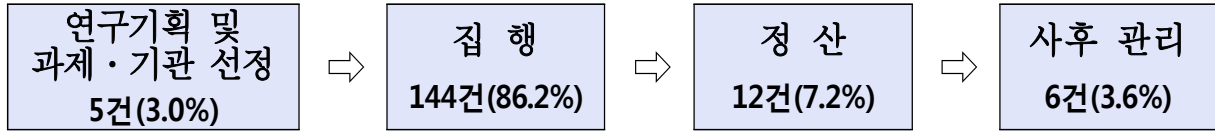
## 9 연구재료 과다 구입 후 타 용도로 사용

- (주)○○은 『△△ 파이프 국산화 기술 개발(‘15.7월~‘17.7월, 8억원)』 과제를 수행하면서 계획된 재료량보다 부풀려 베어링류를 구입한 후 연구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연구장비·재료비 3,200만원 횡령(수사의뢰)

## 2 진행단계별 적발사례

□ 위반사항 총 167건(부당사용액 203억원) 적발

○ 진행단계별 적발건수



○ 집행단계가 144건(86.2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대학(산학협력단) 및 민간기업 등의 수행기관에서 적발이 많았음

□ 주요 사례

### 1) 연구기획 및 과제·기관 선정 단계(5건)

- 산하기관에 특정기관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압력행사 등 2건(사례 ⑤)
- 지자체와 수행기관이 공모하여 사업자 선정조건이 충족된 것처럼 공문서를 발급한 사례 등 3건(사례 ⑤)

### 2) 집행 단계(144건)

#### < 사적(私的) 사용 등 >

- 연구원 인건비 사적 사용 등 15건(사례 ①, ⑧)
- 연구장비·재료비 사적 사용 등 23건(사례 ⑨)
- 공공요금 등 간접비 사적 사용 등 5건(사례 ⑤)

#### < 집행 부적정 등 >

- 연구활동비·과제추진비·연구수당 집행 부적정 등 75건(사례 ③)
- 도덕적 해이 등 기타 26건(사례 ⑥, ⑦)

### 3) 정산 단계(12건)

- 연구비 허위 정산 등 정산 부적정 12건

### 4) 사후관리 단계(6건)

- 10여년간 연구기관 보유기술 불법 유출, 그 대가로 금품수수 등 1건(사례 ⑥)
- 연구결과 허위보고 및 부당 사용액 환수조치 미이행 등 5건